

광주일보 정론직필 61년... 지역민과 함께 호남현대사 이끌어

지역발전 선봉·100년 향한 호남 대변지 다짐



1980년 통폐합된 광주일보 창간호.



광주일보 전신인 전남일보 창간호.

호남 언론의 역사이자 상징인 광주일보가 회갑을 맞았다.

창사 61주년을 맞은 광주일보는 지역민과 함께 현대사를 헤쳐 온 호남 역사의 발자취이다.

광주일보는 시대의 화두를 제시하고, 지역 사회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지역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최근 수년 사이 가장 큰 사회적 흐름인 다문화가정 시대에 발맞춰 다문화가정과 그들의 2세, 이주노동자 등을 다룬 시리즈를 4년여의 장기간담안 게재해 각 계의 반향을 일으켰다.

올해는 지도자들의 리더십 함양을 통해 지역사회의 과제를 심도있게 연구하기 위한 프로그램,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해 지역에 신선한 바람을 불고 왔다. 특히 유일무이한 지역 문화예술잡지인 '예향'을 11년 만에 복간해 지역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대폭 늘렸다.

광주일보는 지역민에 대한 사랑과 봉사,

지역 발전 견인이라는 역사적 소명 아래 100년을 향한 지역민의 대변지로서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다

광주일보는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넘어, 다문화 사회에 돌입한 국가적 흐름을 조기에 포착했다. 지난 2007년부터 4년여 동안 다문화 관련 시리즈를 심층 제작했다. 이 기간 동안 국내 취재는 물론 매년 외국에 특파원을 보내 다문화가정의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했다.

광주일보의 다문화 시리즈는 '온누리안 리포트-국제결혼 다문화가정', '고마워요 당신의 땀방울-외국인 노동자의 삶과 꿈', '함께 열어요, 우리의 미래-다문화가정 2세들의 꿈·희망 대안 찾기' 등이다.

첫 해에는 광주·전남지역 다문화가정들의 원활한 정착을 돕기 위해 관련 연재물을 1년간 진행했으며, 이어 또다른 우리의 이웃인 외국인 노동자들에 지역사회의 배려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인이자 지역민이 된 다문화가정 2세들을 진정한 우리의 자녀로 받



지난 3월 12일 광주 리마다호텔 5층 연회장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개강식에 참석한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아들이기 위한 캠페인성 기획도 게재했다.

이를 통해 광주일보는 제 10·12회 국제엠네스티 언론상,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008년 12월), 제13회 일경언론상, 2011년 한국신문상, 2010년 광주·전남기자협회 대상 등 7개의 대상을 거머쥐었다.

여기에 광주일보는 '문화전쟁'이라는 시대 흐름에 맞춰, 지역 문화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을 복간했다.

했다. 1980년 5월 당시 옛 전남일보와 전남매일은 군화 발에 짓밟힌 광주의 참극을 알리지 못했으며, 당시 진실보도의 의무를 저버린 자책감과 반성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 사회의 비리 척결과 민주화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2002년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건설업자와 짜고 입찰 프로그램을 조작해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는 보도로 해당

1980년 통폐합 광주일보로 재탄생

시대의 화두 제시하고 민주화 기여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삶의 질' 향상

지도자 리더십 함양 '아카데미' 개설

◇지역민과 함께 호남의 역사를 쓰다
광주일보의 뿌리가 되는 옛 전남일보는 민족 상잔의 전쟁 와중인 1952년 2월 10일 태어났다. 또한 다른 뿌리인 옛 전남매일신문은 4·19 직후인 1960년 9월 26일 탄생했다.

두 신문은 1980년 신군부의 강제 언론통폐합 조치에 따라 '광주일보'라는 제호로 다시 창간됐다. 광주일보가 창간일을 4월 20일로 잡은 것은 전신인 옛 전남일보의 법인설립 등기일(4월 20일)에서 비롯됐다.

창간호부터 과격적이었다. 휴전회담기사를 1면 톱으로 보도하면서 시작된 옛 전남일보를 지방신문으로서의 유례없이 이승만 독재를 통렬히 비판하며, 날카로운 필봉을 내세웠다. 지역민의 목소리를 내세우기 위한 일이라면 항상 선봉에 섰다.

60년 4·19 혁명 당시 교문을 박차고 나선 고생들의 의거 모습을 상세히 보도했으며 '4·19 광주 희생자 조위금 및 위문금 모금'을 주도했다. 4·19 당시 시위의 발표 책임자 규명을 줄기차게 요구하기도 했다.

언론보육기인 유신시대에도 정론직필은 시들지 않았다. 74년 10월 25일 긴급조치 1호의 정국 속에서도 옛 전남일보 기자 41명은 언론자유실천을 결의하고 임무를 다하려

공무원 구속과 입찰 프로그램 전면 교체라는 성과를 내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 전남도지사 등 단체장들이 자녀를 특채하고, 관용 여권을 불법 사용한 사실을 고발해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등 언론의 행정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4·19 직후 회생자 유가족 돕기운동에 이어 지역개발 캠페인, 광주학생회관 건립 캠페인, 어린이 교통문화운동, 무등산가꾸기 사업, 마을문고 도서보내기 운동, 남도학숙 캠페인, 재소련 한국학숙설립 캠페인, '북녘 동포들께 운기 보내기', 상무대 반환운동, 5·18국립묘지 민주나무 헌수운동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힘써왔다.

또한 호남예술제, 무등기 전국교교야구대회, 3·1절 전국마라톤대회 등 수많은 문화·예술·체육행사를 통해 다방면의 지역 인재들을 길러내고 호남인들의 문화 갈증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지역의 지도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아이디어와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반갑다, 예향



4월호 예향 표지.



5월호 예향 표지.

광주일보가 창사 61주년을 맞아 자매지 '예향' (4월호·210호)을 복간했다. IMF 경제 한파 이후 지난 2002년 2월호(209호)로 발행이 중단된 지 11년 만이다.

지난 84년 10월 창간된 예향은 수차례 간행물통합 위수잡지로 선정되는 등 17년 동안 호남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전라도 대표잡지로 불려왔다.

광주일보는 지역민들의 즐거운 예향 복간 요구와 지역 내 수준 높은 문화예술 담론을 담아낼 전문매체의 부재를 안타깝게 생각한 끝에 1년여의 준비를 거쳐 복간을 추진해 왔다.

광주일보 자매지 '예향' 복간

지역민 문화 갈증 해소 기대

예향은 특화된 기사를 발굴, 문화가 향유되고 소통되는 구심체 역할에 초점을 뒀다. 특히 오는 2015년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문화담론을 제공하고 견인하는 아카이브로 거듭날 계획이다. 앞으로 예향은 기존의 컨셉에서 한발 나아가, 지역성과 국제성이 가미된 문예전문잡지를 지향하고자 한다.

광주를 중심으로 전남·북 일일, 국내, 국제 등을 포괄하는 취재와 모던하면서도 세련된 편집, 깊이와 품격이 느껴지는 글, 전문 컬러 사진을 통해 품격 있는 문화예술세계를 창안하고 펼칠 예정이다.

광주일보 브랜드가치를 최대한 활용해 미술, 음악, 건축, 영화, 문학 등 장르별 특화된 기사를 트렌드에 맞게 반영, 문화가 향유되고 소통되는 공간을 제공한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이제 문화는 광주로 통한다. 광주와 문화는 '예향'으로 통하고, '예향'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로 향할 것이다.

/박성천기자 sky@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3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2타경 28811	1	영광군 영광읍 단구리 370-12 시작스카이 101동 5층 516호 39.96㎡	아파트	53,000,000 53,000,000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2타경 18081	1	광주광역시 북구 계림동 85-55 291㎡ [현황:시멘트 벽돌조스레이트지붕일층빌라 지붕단층] 27.21㎡ 주택 28.1㎡ 변소 1.98㎡ 부속건물 신축주택 17.64㎡ 제시의 주택 9㎡	단독주택	27,618,690 27,618,690	일괄매각, 제시의 건물포함, 공유자의 우선매수권행사는 1회만허용, [공유자임인화지분14분의2전부]
2012타경 27962	1	광주광역시 북구 상암로 27-11 49.58㎡ 부속건물 주택26.44㎡ [현황:소재별명인] 부속주택 22.47㎡ 제시의 창고 등 63.1㎡ [제시외건물포함]	단독주택	5,591,790 5,591,790	건물만매각, 건물을위한관습법상정지상권설립여부불분명
2012타경 28934	1	광주광역시 북구 효충동 394-4 420㎡ [공유자지분선종지분12분의1전부]	대	7,210,480 7,210,480	일괄매각, 제시의 건물포함, 공유자의 우선매수권행사는 1회만허용
[대지/임야/전답]					
2012타경 15310	1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194-14 649㎡ [현황:전 임부묘지][공유자지분종지분11분의2전부]지상분묘소재로분묘기전권설립여지있음]	전	5,900,000 5,9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공유자의우선매수권행사는1회만허용
	2	동소 738-1 642㎡ [묵록1과지분내용동일][공유자의우선매수권행사는1회만허용]	답	5,601,600 5,601,6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1	광주광역시 북구 화회동 224-23 418㎡	답	220,704,000 220,704,000	

2012타경 16283	2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산4 17157㎡ [공유자지분선종지분5분의1전부][지상분묘소재로분묘기전권설립여지있음]	임야	12,009,900 12,009,900	공유자의우선매수권행사는1회만허용
--------------	---	---	----	--------------------------	-------------------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2타경 16283	3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산64 38479㎡ [공유자지분, 이진호각지분5분의1전부]	임야	38,479,000 38,479,000	공유자의우선매수권행사는1회만허용, 행치임
2012타경 20848	1	화순군 도암면 원천리 산53 10911㎡ [지상분묘소재로분묘기전권설립여지있음]	임야	2,727,500 2,727,500	행치임
	2	화순군 도암면 원천리 1046 2205㎡ [분묘소재로분묘기전권설립여지있음]	전	14,773,500 14,773,5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행치임
2012타경 21483	1	곡성군 목곡면 수리 산123 7240㎡ [공유자의우선매수권행사는1회만허용]	임야	5,430,000 5,430,000	공유자의우선매수권행사는1회만허용, 행치임
2012타경 26983	1	광주광역시 북구 통학동 603-5 498.5㎡	대	1,188,255,000 1,188,255,000	일괄매각
	1	화순군 동북면 신율리 산7 40264㎡	임야	15,702,960 15,702,960	행치임, 현황상상
2012타경 27184	2	화순군 동북면 가수리 산289 13488㎡	임야	9,036,960 9,036,960	분묘소재
2012타경 28057	1	화순군 이서면 보산리 산24-2 14326㎡ [공유자지분종지분4분의1전부]	임야	7,306,260 7,306,260	행치임
2012타경 28163	1	광주광역시 북구 누운동 235-1 346.2㎡ [공유자의우선매수권행사는1회만허용]	대	137,445,000 137,445,000	매각외건물존재함, 매각외건물유치한법정지상권설립여지있음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2타경 25546	1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67 490㎡	대	991,607,400 991,607,4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광주광역시 북구 상봉로 120번길 33 1층27 9.7㎡ 2층264.96㎡ 3층241.64㎡ 4층206.8㎡ 및고폭면 1㎡ 5층154.84㎡ 지하실 280.22㎡ 제시외 부속 등 124.5㎡	근린시설		

[기타]

2012타경 31114	1	화순군 도암면 도장리 310-1 154㎡ [공유자지분선종지분6분의1전부]	대	18,601,410 18,601,410	일괄매각, 공유자의우선매수권행사는1회만허용
		화순군 도암면 목두리길 7 98.2㎡ [묵록]창고	창고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권인자가 매각절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 2. 매각 기일 : 2013. 5. 10. [금] 10:00
- 3. 매각결정 기일 : 2013. 5. 10. [금] 16:00
- 4. 매각 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방
- 5. 매각방법
① 입찰방에 비치된 기일입찰요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방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고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는 매수신청보증금에 충당한다.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은 매수신청보증금에 충당한다.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은 매수신청보증금에 충당한다.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은 매수신청보증금에 충당한다.
-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입찰방에 비치된 입찰요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입찰하는 자는 최고가매수권인으로 선정되고, 최고가 매수권인으로 입찰한 자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 ④ 최고가매수권인자가 자진취득매수권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의 매수신청보증금을 입찰절차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한다.
- 6. 매각여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가 매수권인자가 매각대금에 대한 매각결정일까지 매각허가 여부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결정일까지 매각대금에 대한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매각대금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 ② 지정된 매각대금기한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한다. 다만, 매각대금기한이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잔여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한후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 ②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을 위해서는 등록서의 지상권과세서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확인서를 지출하여 반환하고, 국민주택권리발행증을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이 위 등기를 축적하여 준다.
- ③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후자, 소유자 또는 대항책없는 부동산 소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상권 또는 설정된 날로부터 만주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미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② 입찰방에 비치된 입찰요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입찰하는 자는 최고가매수권인으로 선정되고, 최고가 매수권인으로 입찰한 자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 ③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설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④ 입찰방에 비치된 입찰요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입찰하는 자는 최고가매수권인으로 선정되고, 최고가 매수권인으로 입찰한 자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 ⑤ 소유권이전 매각허가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권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물건은 매각기일 전에 매각신청이 허가되거나 집행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 ⑦ 산재에 놓여있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축적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전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ரி방한 계사나 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전까지 제후자, 소유자 또는 대항책없는 부동산 소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⑨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공고명세서]
-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상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법원명세서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공판되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개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3. 4. 19.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정권